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9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4. 25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「국가유산기본법」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」에 근거법령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”를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조”로 변경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“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”를 “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”로 변경(안 제2조 및 안 제4조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 - (2) 입법예고(2024. 3. 22 .~ 4. 11.) 결과 : 의견 없음
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”를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”를 “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”로 하고,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제1항”을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”를 “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·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조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”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“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” -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조제1항-----</p>
<p>제4조(사무위탁)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등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사무위탁) ① -----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□ 국가유산기본법

제31조(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) ① 문화재청장은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, 「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」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,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,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(이하 이 조에서 “세계유산등”이라 한다)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,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